

의안번호	2215050
의 퇴 인	박정훈의원
회 답 일	2026. 1. 9.
추 계 번호	25B5095

사이버재해보험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1,400만원(연평균 2,3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사이버재해보험 심의위원회 (안 제7조)	11	11	11	11	11	54	11
손해평가 요령 마련 (안 제15조제2항)	60	—	—	—	—	60	12
합 계	71	11	11	11	11	114	23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	사이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1. 보험목적물의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험가입의무 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의무규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함(제3항)	
2	안 제15조(손해평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2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5항)	
3	안 제16조(손해평가인)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정보보안 또는 사이버재해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제1항)	의무규정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 교육을 받아야 함(제4항)	
4	안 제19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이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20조(보험료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22조(사이버위험지표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예방과 사이버재해보험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침해사고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재해 위험 정도를 업종별·규모별로 표시하는 지표(이하 “사이버위험지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함(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이버위험지표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23조(학술 조사·연구의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이버재해 예방과 사이버재해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		○	•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15조 (손해평가)	- 손해평가 요령 마련 (제2항)	○	•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 손해평가인 확보·양성 시책 강구 (제5항)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손해평가인 확보·양성 시책 및 관련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16조(손해평가인)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교육 대상자의 수, 교육 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4	안 제19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이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교육·홍보의 내용 및 방법, 정책자금·신용보증 지원의 대상자 및 지원의 내용·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20조(보험료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수 및 보험료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보험료 지원의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6	안 제22조(사이버위험지표의 작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이버재해 위험 정도를 업종별·규모별로 표시하는 지표(이하 “사이버위험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관리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이버위험지표의 작성 단위·내용, 전산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23조(학술 조사·연구의 진흥)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이버재해 예방과 사이버재해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조사·연구의 실시 횟수 및 내용·방법, 전문인력 양성 시책 및 관련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8	안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제정안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알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안 제7조)

- (위원회 구성) 제정안에 따른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 제정안은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의 위원 신분 및 구성 인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농업재해보험심의회¹⁾)를 참고하여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명, 부위원장 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상임위원 4명(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임위원 9명(민간 전문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1)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차관) 1명, 부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단) 1명, 상임위원(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공무원) 5명, 비상임위원 14명(민간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됨

[표 2]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 구성(안)

구 분	위원 수	위원 신분	비 고
위원장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제정안에 명시 • 유사사례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의 위원 구성 참고
부위원장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상임위원	4명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임위원	9명	관련 단체, 학계 등 사이버재해보험 관련 민간 전문가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 개최 수)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사례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의 경우 연 3~4회 회의 개최
- (비상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400만원(연평균 1,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9	9	9	9	9	-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1	11	11	11	11	54	11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등은 별도로 편성함(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p.222.)

□ 손해평가 요령 마련(안 제15조제2항)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의 평균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 － 손해평가 요령은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하고, 이후 개정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손해
평가 요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사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손해의 조사 등에 대한 업
무지침 마련 연구용역’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표 4] 유사사례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유사사례명	실시년도	용역 내용	소요예산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손해의 조사 등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연구용역	2024	정부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손해조사 등을 할 경우에 대비한 업무절차서 및 업무지침 마련	5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019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개선 방안, 검증조사 실시 방안 검토 등	70
평 균				6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 (추계 결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000만
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손해평가 요령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손해평가 요령 마련 (안 제15조제2항)	60	—	—	—	—	60	12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의 실시 방법 및 비용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